

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(2001. 1. 9) 및 소방법중개정법률(2001. 1. 26)

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

주요골자

- 가. 위험물제조소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에 대하여는 보유공지기준, 펌프설비기준 등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함(제161조제1항)
- 나.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도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제171조)
- 다.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함(제224조)
- 라.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정함(제225조)
- 마.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탱크의 종류에 자동차 등을 점검·정비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및 등유용 간이 저장탱크 등을 추가하고, 그 설치 기준을 정함(제237조)
- 바. 고정주유설비의 토출량을 화재예방상 안전한 범위로 제한하고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의 기준을 정함(제238조제2항 및 제4항)
- 사. 주유취급소에는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·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제239조제1항)
- 아. 고정주유설비가 보이는 방향의 건축물 1층에 15제곱미터 이상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도록 하던 기준을 삭제함(제239조제2항)
- 자. 위험물의 운반용기 중 소형인 운반용기에 대하여는 위험물의 통칭명 및 해당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주의사항을 표시할

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완화함(제278조제8항 내지 제10항)

- 차. 위험물의 저장·취급에 관한 공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한 제조소 등의 경우 이 규칙에 의한 제조소 등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(제284조의2)

소방법중개정법률

주요골자

- 가. 위험물의 저장·취급 및 운반기준을 중요 기준 및 세부기준으로 나누고, 세분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(법 제15조제2항·제26조·제119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2)
 - 나. 다중이용시설의 계단·복도 및 비상구 등 피난·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위반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(법 제30조의 2 신설)
 - 다.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(법 제62조제2항)
 - 라. 소방시설설계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등을 강화함(법 제65조의9제1호의2 및 제112조제11호 신설)
 - 마.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법 제65조의 10 신설)
- ※시행일: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(2001.7.27) ☉